

職務發明補償制度 통한

技術確立만이 成長約束

서울味元株式 社 篇

職務發明 規程

第 1 章 總 則

第 1 條(目的) 이 規程은 會社 從業員에 대한 發明을 保護, 獎勵하여 職務에 관한 研究開發意欲을 鼓吹시키고 그에 따른 特許權 및 其他 工業所有權의 合理的 管理運營을 함으로써 會社의 發展은 勿論 國家產業發展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 2 條(定義) 이 規程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 各號와 같다.

1. “職務發明”이라 함은 會社 從業員이 그 職務에 關하여 發明한 것이 性質上 會社의 業務範圍에 屬하고, 그 發明을 하게 된 行爲가 從業員의 現在 또는 過去의 任務에 屬하는 것을 말한다.
2. “自由發明”이라 함은 前號의 規定에 의한 發明以外에 會社 從業員이 한 發明을 말한다.
3. “發明者”라 함은 職務發明을 한 會社 從業員을 말한다.
4. “從業員”이라 함은 會社의 社員, 雇員 및 常勤囑託을 말한다.

第 3 條(權利的 承繼) ①職務發明은 會社가 그 權리를 承繼한다. 다만 會社가 그 權리를 承繼할 必要 또는 價値가 없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從業員이 하 職務發明이 第3者와 共同으로 한 것인 境遇에는 그 發明者가 가지는 權利的 持分만을 承繼한다.

第 4 條(發明에 대한 補償) 會社는 前條의 規定에 의하여 權리를 承繼한 때에는 이 規程에서 定하는 바에 따라 補償金を 支給하여야 한다.

第 5 條(主務部署) 職務發明의 主務部署는 本社 企劃室로 한다.

第 2 章 届出 및 出願

第 6 條(届出) ①發明을 한 從業員은 그 發明의 內容을 別紙書式 第1號의 “業務와 關聯된 發明届出書”에 의하여 所屬部署長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②所屬 部署長은 前項의 規定에 의한 届出을 받은 때에는 그 權利的 承繼등에 관한 意見書를 添附하여 擔當重役의 承認을 얻어 遲滯없이 主務 部署長에게 送付하여야 한다.

③意見書에는 所屬部署의 業務, 發明者의 職務와의 關聯여부, 發明의 實用性등을 記載하여야 한다.

第 7 條(審査) ①主務部署長은 前條에 의하여 届出된 發明을 職務發明審査委員會(以下 “委員會”라 稱함)의 審議에 廻付하여야 한다.

②委員會는 當該, 廻付된 發明에

대하여 다음 各號의 事項을 審議한다.

1. 當該 發明의 特許性 및 職務發明의 與否

2. 會社가 權리를 承繼할 것인지의 與否

3. 第13條에 規定한 登錄補償金

第 8 條(出願) 前條의 審議에 의하여 特許를 받을 權리를 會社가 承繼할 것을 결정한 때에는 主務 部署長은 社長의 承認을 얻어 즉시 會社名義로 特許出願을 하여야 한다.

第 9 條(發明者에의 通知) 主務部署長은 第7條 第2項에 의한 委員會의 審査結果를 迅速히 所屬部署長을 經由하여 發明者에게 文書로써 通知하여야 한다.

第10條(特許를 받을 權利的 讓渡義務) 發明者는 會社가 第8條의 規定에 따라 特許를 받을 權리를 承繼할 것을 決定한 때에는 그 權리를 會社에 讓渡하여야 한다.

第11條(再審請求) ①發明者는 第9條의 規定에 의하여 委員會의 審査結果를 通知받은 날로부터 30日 以內에 社長에게 文書로서 再審을 請求할 수 있다.

②前項의 再審請求는 所屬部署長을 經由하여 主務部署長에게 提出한다.

③主務部署長은 前項의 再審請求를 받을 때에는 委員長에게 當該

發明的 再審査를 위한 委員會의 開會를 要請한다.

④前項의 再審結果 委員會가 權利承繼決定을 한 때에는 主務部署長은 第8條의 規定에 따라 出願을 하고 拒絕을 하는 때에는 理由書를 添附하여 所屬部署長을 經由 當該 發明者에게 文書로써 通知하여야 한다.

第12條(出願 制限) 發明者는 會社가 當該 發明者의 發明이 職務發明이 아니라고 認定하거나 또는 職務發明일지라도 그 特許를 받을 權利를 會社가 承繼하지 아니할 것을 決定한 後가 아니면 特許出願을 하거나 또는 特許를 받을 權利를 第3者에게 讓渡할 수 없다.

第 3 章 補 償

第13條(登錄補償) ①會社가 特許를 받을 權利를 承繼하여 이것이 登錄되었을 때에는 그 發明의 優秀性 및 實用價值등을 參酌하여 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權利 每件마다 다음 基準에 따라 別紙書式 第2號에 依據하여 登錄補償金을 支給한다(1978年 8月 25日 本項 改正)

等級	特許	實用案	意匠
1 級	1000,000	600,000	300,000
2 級	600,000	300,000	100,000
3 級	300,000	100,000	50,000
4 級	100,000	50,000	20,000
5 級	50,000	20,000	10,000

②主務部署長은 前項의 權利登錄 및 登錄補償金支給決定을 別紙書式 第3號의 “特許(考案)登錄通知書”에 의하여 遲滯없이 發明者 또는 支給받을 者에게 文書로써 通知한다.

③特許出願을 한 發明에 대해서는 第1項에 規定한 登錄補償金中

一部를 우선 支給할 수 있다.

第14條(實績補償) ①主務部署長은 出願 또는 登錄된 發明의 實施活用狀況을 年 2회에 걸쳐 調査하여 委員會에 報告한다.

②前項의 調査結果 出願 또는 登錄된 發明의 實施效果가 會社經營實績에 顯著한 貢獻을 하었다고 認定하는 경우에는 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다음 基準에 따라 實績補償金을 支給한다. 다만, 特許 3回, 實用新案 2回, 意匠 1回를 超過하지 못한다.

第15條(處分補償) 第8條의 規定에 따라 出願하여 會社所有로 登錄된 特許權을 讓渡, 實施許與 또는 其他 處分을 할 때에는 그 特許權의 內容 및 收入金등을 參酌하여 發明者에게 다음 各號의 補償金을 支給한다.

1. 特許權의 實施를 有償으로 許與한 때에는 그 實施料收入金의 5% 以上 10% 以下에 該當하는 金額
2. 特許權을 有償으로 讓渡한 때에는 그 代金の 5% 以上 10% 以下에 該當하는 金額
3. 職務發明을 第3者에게 無償으로 實施를 許與한 때에는 第14

等級	A 級	B 級	C 級	D 級	E 級
金額	500,000	400,000	300,000	200,000	100,000

條 第2項의 基準에 따른 金額

第16條(補償金의 持分支給) 第3條의 補償金을 支給받을 수 있는 權利를 가진 發明者가 2人 以上 일 경우에는 그 持분에 따라 支給한다.

第17條(退職 및 死亡後의 支給) ① 發明者가 退職할 境遇에는 第13條 내지 第14條에 定한 補償金의 2分の 1에 該當하는 金額을 支給한다.

②發明者가 死亡하였을 경우에는

그가 支給받을 수 있는 補償金을 相續人에게 支給한다.

第18條(補償金의 不返還) 發明者 또는 그 相續人에게 支給된 補償金은 그 特許가 無効로 된 境遇에 이를 返還하지 아니한다. 다만, 特許가 冒認에 의하여 無効가 된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第19條(異議申請) ①發明者 또는 그 補償金을 支給받을 權利가 있는 者는 會社가 第14條 내지 第17條에 定한 補償金을 支給치 않거나 또는 不當한 支給을 한 境遇에는 그事實을 안 날로부터 30日 以內에 社長에게 文書로써 異議申請을 할 수 있다.

②前項의 異議申請은 所屬部署長을 經由하여 主務部署長에게 提出한다.

③主務部署長은 前項의 異議申請을 받은 때에는 진상을 調査한 後 委員會에 報告하고 그 審議를 要請한다.

④前項의 審議結果 委員會가 새로이 補償金을 支給하는 決定을 한 때에는 主務部署長은 즉시 社長의 承認을 얻어 그 決定에 따라 執行하여야 한다.

第 4 章 職務發明審査委員會

第20條(職務發明審査委員會) 職務發明에 關한 重要事項을 審議하기 위하여 本社에 職務發明審査委員會를 둔다.

第21條(委員會의 構成) ①委員會는 委員長 1人, 副委員長 1人을 包含한 9人의 委員으로 다음과 같이 構成한다.

企業發展戰略, 그 捷徑 (4)

委員長: 企劃擔當理事
 副委員長: 技術開發擔當理事
 委員: 主務部署長, 販賣企劃部長, 生産管理室長, 組立技術部長, 品質管理部長, 技術管理部長, 試驗研究部長

②委員회의 諮問에 應하기 爲하여 委員長은 專門家를 諮問委員으로 委囑할 수 있다.
 ③諮問委員의 委囑은 委員長이 提請하여 社長이 한다.
 ④職務發明을 審議함에 있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發明者 또는 關係者를 出席시켜 意見を 聽取할 수 있다.

第22條(委員長) ①委員長은 委員會의 會務를 統理하고 委員會를 代表한다.
 ②委員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主務部署長이 委員長의 職務를 代行한다.

第23條의 1(委員會의 議決事項) 委員會는 다음 各號의 事項을 審議한다.

1. 第7條 第2項에 定한 事項
2. 特許權 獲得에 따른 評價 및 補償金決定에 關한 事項
3. 特許權讓渡, 實施許與 및 其他 處分에 關한 事項
4. 發明者의 異議申請에 關한 事項
5. 職務發明規程의 改正 및 運用에 關한 事項
6. 其他 委員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한 事項

第23條의 2(特許性的 審査基準) 發明의 特許性審議는 다음 基準에 依한다.

1. 産業에 利用될 수 있는 産業性
2. 技術的 創作의 新規性
3. 技術內容의 進歩性
4. 不特許事由

第24條(委員會의 職事等) ①委員

長은 主務部署長의 召集 要求가 있을 때 또는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 委員會를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된다.

②會議는 委員長을 包含한 在籍委員 過半數의 出席으로 開會하고 出席委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③表決結果 可否同數인 경우에는 議長이 決定權을 가진다.

④委員長은 委員會 召集이 困難하거나 不得已한 事情이 있다고 認定할 때에는 書面決議로 갈음할 수 있다.

第25條(幹事) ①委員會에 幹事 1人을 둔다.

②幹事는 特許管理擔當課長이 된다.

③幹事는 委員長의 命을 받아 審議案件을 整理하고 庶務를 處理하며 會議錄을 作成 維持한다.

第5章 雜 則

第26條(自由發明의 承認) ①會社는 自由發明에 대하여 發明者로부터 別紙書式 第4號의 “自由發明(特許權)讓渡申請書”에 의한 特許를 받을 權利 또는 特許權을 會社에 讓渡한다는 申請이 있는 때에는 이 規程에서 定하는 職務發明의 承繼節次에 準하여 決定한다.

②前項의 規定에 의하여 會社에서 特許를 받을 수 있는 權利를 承繼한 境遇에는 第13條 내지 第18條를, 特許權을 承繼한 境遇에 第14條 내지 第18條를 各各 準用한다.

第27條(秘密保持) 發明者 또는 이 規程에 의하여 職務發明에 關한 業務를 取扱하는 者는 그 職務發明의 內容에 대한 秘密을 지켜야 한다.

第28條(發明者의 協力義務) 發明

者는 그가 한 職務發明의 處分 또는 實施에 있어서 會社 또는 實施許與를 받은 者가 必要로 하는 事項이 있을 때에는 이에 協力할 義務가 있다.

第29條(實用新案權 및 意匠權에 關한 準用) 이 規程은 實用新案權 및 意匠權에도 準用한다.

第30條(外國出願의 取扱) 이 規定은 外國의 工業所有權을 對象으로 하는 發明에 대해서도 이를 準用한다.

附 則

①(施行日) 本 規程은 公布日로부터 施行한다.

反 共 犧 牲 遺 族
 내 몸 같이 보살피자!